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(추미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744 발의연월일: 2024. 10. 17.

발 의 자:추미애·강유정·강준현

권향엽 · 김남근 · 김남희

김문수 · 김민석 · 김영환

김용민・김 윤・김주영

김태년 · 김 현 · 문대림

민병덕 • 민형배 • 민홍철

박균택 • 박민규 • 박주민

박지혜 • 박해철 • 박홍배

박희승 • 부승찬 • 서미화

안도걸 • 양부남 • 위성곤

위성락 • 이광희 • 이병진

이성윤 • 이수진 • 이용선

이정헌 • 이훈기 • 임미애

임호선 · 장종태 · 전용기

전재수 · 정성호 · 정을호

정일영 · 정진욱 · 조인철

최민희 · 한민수 · 허 영

홍기원 • 황명선 • 황정아

의원(5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범죄가 발생한 후 시간이 흐를수록 사회적 감정이 진정되

어 처벌의 필요성이 줄어들거나 사건에 대한 기억이 부정확해지고 증거가 제대로 보존되지 않을 가능성 때문에 공소시효 제도를 두고 있음.

그러나, 대통령과 대통령의 배우자 그리고 그 가족의 경우, 권력으로 자신들의 범죄혐의를 집권기간 동안 철저하게 은닉할 가능성이 크며, 그로 인해 공소시효가 완성된다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킬 수 있음.

이에 대통령과 대통령의 배우자 그리고 그 가족이 대통령 취임 이전에 범한 죄의 공소시효를 퇴임일까지 정지되도록 하여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함(안 제253조의3 신설).

법률 제 호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53조의3(대통령 등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) 다음 각 호의 자가 범한 죄의 공소시효는 「공직선거법」 제187조제3항, 제4항에 따른 당선 증을 교부받은 날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퇴임일까지 정지한다.

- 1. 대통령(「대한민국헌법」 제71조에 따른 대통령권한대행과 「대한민국헌법」 제67조 및 「공직선거법」 제187조에 따른 대통령당 선인을 포함한다)
- 2. 대통령의 배우자
- 3. 위 각 호의 4촌 이내의 혈족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적용례) 제25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 전에 행하여진 범죄로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

대하여도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u> <신 설></u> | 제253조의3(대통령 등에 대한 공 |
| | 소시효 정지) 다음 각 호의 자 |
| | 가 범한 죄의 공소시효는 「공 |
| | 직선거법」 제187조제3항, 제4 |
| | 항에 따른 당선증을 교부받은 |
| | 날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|
| |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퇴임일까 |
| | 지 정지한다. |
| | 1. 대통령(「대한민국헌법」 제 |
| | 71조에 따른 대통령권한대행 |
| | 과 「대한민국헌법」 제67조 |
| | 및 「공직선거법」 제187조에 |
| | 따른 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 |
| | <u>다)</u> |
| | <u>2. 대통령의 배우자</u> |
| | <u>3. 위 각 호의 4촌 이내의 혈족</u> |